

2018년도 강원지방우정청 우정9급(계리)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18년도 우정9급 우정서기보(계리)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3월 5일

강원지방우정청장

1. 선발 예정인원 및 시험과목

직급 (직종)	시험구분	선발예정인원 (총 8명)	시험과목(선택형 필기시험) 3과목
우정9급 우정서기보 (계리)	공개경쟁 채용시험	일반 : 7명 장애인 : 1명	한국사(상용한자 포함) 우편 및 금융상식(기초영어 포함) 컴퓨터일반

※ 『우편 및 금융상식』 학습자료는 강원지방우정청 홈페이지(채용공고)에 공고문과 함께 게시

모집단위 (지역)별 구분모집표

(단위 : 명)

구 분	모집단위(지역)	선발인원
강원지방우정청(일반)	강원지방우정청 관할 전 지역	7
강원지방우정청(장애인)		1

- ※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8항에 따라 합격자는 당해 모집단위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 타 지역(기관)으로 전보 될 수 없습니다.
- ※ 우정9급(계리)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 후 강원지방우정청 관할 우체국 등에서 근무하게 됩니다.
- ※ 계리직종의 직무내용은 우체국금융업무·회계업무·현업창구업무·현금수납 등 각종 계산관리업무 및 우편통계 관련 업무 등입니다.

2. 시험방법

○ 제1차 시험 : 선택형 필기시험

- ※ 배점비율 및 문항형식 : 매 과목당 100점 만점, 객관식 4지 택일형 20문항
- 상용한자는 한국사에, 기초영어는 우편 및 금융상식에 각 1~2문항씩 포함하여 출제됨
- 시험시간 : 60분 (문항당 1분 기준, 과목별 20분)

○ 제2차 시험 : 면접시험

3. 응시자격

가. 응시결격사유 :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, 국가공무원법 제74조(정년)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할 수 없습니다.(판단기준일 : 면접시험 최종예정일)

○ 국가공무원법 제33조

-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 - * 개정된 민법 시행(2013.7.1.)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. 6.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.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○ 국가공무원법 제74조(정년)

-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-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.

나. 응시연령 : 18세 이상(2000.12.31. 이전 출생자)

다. 학력 및 경력 : 제한 없음

라.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
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
-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장애인은 일반분야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일반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.
(단,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)
-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(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)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마. 응시자 거주지역 제한 안내

- 응시자는 공고일(2018. 3. 5) 현재 '강원지방우정청 관할지역(강원도)'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.
※ 향후 채용시험이 시행될 경우 응시자 거주지역 제한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4.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

시험명	접수기간	구분	시험장소 공고일	시험일자	합격자 발표
우정9급 우정서기보 (계리) 공개경쟁채용시험	2018.6.5 ~ 6.8 (최소마감일 : 6.11, 21:00)	필기시험	2018. 7.10.	2018. 7.21	2018. 8.21
		면접시험	2018. 8.21.	2018. 10.6	2018. 10.11

- 모든 시험 일정은 강원지방우정청 홈페이지(<http://www.koreapost.go.kr/kw>)에 공고합니다.
-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 일에 강원지방우정청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사이트에 게시하며,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합격을 통지합니다.
- 필기시험 성적 확인 방법·일정은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시 안내하며,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5. 응시원서 접수(인터넷 접수만 가능)

가. 접수방법 및 시간

- 접수방법 : 강원지방우정청 홈페이지(<http://www.koreapost.go.kr/kw>) ‘2018년도 우정9급(계리) 공개경쟁채용 인터넷 원서접수 바로가기’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.
- 접수시간 :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:00~21:00
- 응시수수료 : 5,000원
 - ※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(휴대폰 결제, 카드결제, 계좌이체 비용)이 소요됩니다.
 - ※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자가 응시수수료를 결제(납부)하지 않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 포기로 처리합니다.
 - ※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료를 환불하며, 응시원서 접수시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.(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)
- 사진등록 :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으로 사진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사진규격 : 반명함 증명사진, 크기 3.5cm×4.5cm(140×180pixel), 파일용량 100Kbyte미만, 파일형식 JPG, GIF
 - ※ 배경이 있는 사진, 스냅사진,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,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, 모자,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, 얼굴이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나.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

-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내용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 - ※ 장애유형(시각, 청각, 지체, 뇌병변)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, 구비서류 등을 붙임 안내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,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.
-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,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.
- 원서접수 시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
- 모집단위(지역)별 제1차시험 응시지역(시험 볼 지역)은 아래와 같습니다

지 역 별	강원
제1차시험 응시지역	원주

6. 가산점 적용

가.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비율표

구 분	가산비율	비 고
취업지원대상자	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	•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

- ※ 국가직공무원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·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『공무원임용시험령』 개정(2015.5.6.)에 따라 2017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.
- ※ 『국가공무원법』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『공무원임용시험령』 제31조의2 3항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,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는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
나. 취업지원대상자

- 『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』 제16조,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29조, 『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33조, 『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』 제20조, 『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, 『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10% 또는 5%)을 가산합니다.

- ※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
- ※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
- ※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,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(☎1577-0606) 등에 확인

다.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

-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.
※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[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]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방법으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7. 기타 사항

- 가. 필기시험에서 과락(40점 미만)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,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- 다. 『공무원임용령』 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‘학업의 계속’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라. 본 공고문의 내용은 나라일터(www.gojobs.go.kr), 대한민국공무원되기(<http://injae.go.kr>)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.
- 마.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 또는 통지하겠습니다.
- 바. 향후 우정9급 우정서기보(계리)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최소인원으로 실시되거나 실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사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(☎ 033-749-204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